



# 국립아동청소년 공연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공청회

2019년 4월 2일 (화)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오신환

주관 |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

## 목 차

---

- 04 **개회사**  
국회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 07 **발 제**  
**우리는 왜 국립아동청소년공연예술센터  
건립을 갈망하는가!**  
김숙희 박사(종로 아이들극장 예술감독)
- 13 **아동청소년 공연예술 활성화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김종선 이사(경기문화재단)
- 23 **토 론**  
이선영 과장(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유 열 대표(유열컴퍼니)  
엄현희 (연극평론가)  
김성제 소장(국립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

## 개 회 사

국회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오신환입니다.

민의를 전담인 국회에서『국립아동청소년공연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국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권익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여서 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개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사단법인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방지영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 바쁜 시간을 내어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31조 2항을 보면,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여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국립 혹은 시립 혹은 그에 못지않은 국가지원으로 운영하는 어린이 혹은 청소년극장이나 극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있다 해도 지자체 수준의 미미한 지원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어릴 때부터 문화예술 체험을 적극 권장함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예술의 날’ 등을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의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의 갈 길은 아직 요원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곧 국가의 미래입니다. 아동청소년들에게 문화를 전해주고, 예술을 보고 느끼게 해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미래를 선사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들의 소중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이제는 우리 어른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방안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신 고견들은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2일  
국회의원 오신환

국립아동청소년공연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공청회

발제

---

우리는 왜 국립아동청소년공연예술센터  
건립을 갈망하는가!

김숙희 박사  
(종로 아이들극장 예술감독)

## 우리는 왜 국립아동청소년공연예술센터 건립을 갈망하는가!

김 속 희 (종로 아이들극장 예술감독, 前 아시테지 코리아 이사장)

국립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는 이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 보육의 의미가 무엇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국립기관들- 국립어린이과학관, 국립어린이도서관, 국립어린이박물관, 국립어린이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어린이미술관, 국립청소년 수련관, 국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국립 초등학교 등-에 어찌서 문화예술 공간은 없는 것일까. 그래서 문화예술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공연예술에 종사하는 우리들이 명확한 목표와 당위성을 바탕으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국립공연예술센터 건립을 주장한다.

### 1. 수용자와 공급자의 실리실득

#### 1)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 전문가의 입장

- 양질의 공연을 제작할 수 있다.
- 실험적 공연을 시도할 수 있다.
- 사회적 이슈를 담은 공연을 시연할 수 있다.
- 좋은 공연과 창작을 위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다.
-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 공연 후 사후 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 최소한 생계를 위협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다.
-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가능하다.
- 후진 전문가 양성으로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다.

## 2) 관객으로서의 어린이청소년의 입장

- 좋은 환경에서 공연을 향유할 수 있다.
- 연령에 합당한 공연을 볼 수 있다.
-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지적 활동이 가능하다.
- 공연을 통해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
- 사회적 문제의식을 수용할 수 있다.
- 공연을 통한 타인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다.
- 상상력 향상으로 창의적 활동에 도움이 된다.
-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실감한다.

## 2. 해외 사례

국내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서 이미 해외사례를 연구하여 2012년 '어린이청소년에게 문화를, 미래를, 돌려주자!'라는 제목으로 연구총서가 발간되었다. 이 책자에서 주요 6개국-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미국, 호주-의 사례가 각국의 어린이청소년 연극사와 문화정책 등과 함께 국립극장으로서의 공간이 자세히 소개되어있다. 간추리자면, 독일의 파르크라우의 극장과 시립극장, 프랑스 파리의 샤키오 국립 어린이극장과 지방에 위치한 국립 어린이청소년 연극센터, 영국 유니콘극장, 스웨덴의 국립순회극단 (스웨덴은 독자적인 국립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국립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미국의 어린이극장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책자에 소개되어 있다.

이외에도 필자가 방문한 경험이 있는 러시아 국립, 시립 어린이극장, 구립 형태의 이태리 라바라카 라까찌 극장, 호주의 오페라하우스 소속의 어린이극장, 이스라엘 홀름시의 국립어린이극장, 일본 동경의 어린이의 성(지금은 폐장), 멕시코의 국립 공용극장, 뉴질랜드 시립어린이극장, 오스트리아 MQ센터 내의 국립어린이극장, 리투아니아 아트 프린트 극장, 노르웨이 블랙시어터, 슬로베니아 국립 인형극장, 스페인의 시립 어린이극장 등이 있으며 국립은 아니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대폭 받으며 국립극장 산하 혹은 국립에 버금가는 사립극장들이 존재하고 있다.

흔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라 하면 선진국이라는 인상을 갖게 되는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국립 혹은 시립 혹은 그에 못지않은 국가지원으로 운영하는 어린이 혹은 청소년극장이나 극단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하여 23년의 세월이 흘렀고 또한 2005년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14년이 되었으나 2016년 개관한 구립 종로 아이들극장 외에 아직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변변한 공연예술 공간이 없다. (광주 아시아문화원의 어린이문화원의 경우는 다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아동청소년극이 유럽으로부터 발전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대륙의 어린이연극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해당한다. 급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 베이징의 국립아동극장과 국립아동극단, 상해 아동예술극장, 지난 아동예술극장의 활동이 우리 아동극계를 위협하고 있다. 베이징 국립아동극장의 경우, 극장 내에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3개 있고 극단을 포함해 상주 인원이 250명이 넘는다. 베이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에 어린이전용극장이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의 예술위원회가 주도하는 싱가포르 어린이청소년 예술센터가 있으며 아직 개발도상국에 있는 많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국립어린이극장이 있는 나라가 더러 있다. 베트남 국립어린이극장(1968), 태일랜드 마야극장, 네팔의 어린이연극센터, 방글라데쉬의 다카 리틀 시어터, 인도의 어린이를 위한 공간 '발하반'(도서관과 공연을 위한 공간), 몽골의 국립어린이 청소년극장, 국립 인형극장, 우즈베키스탄의 국립 아동청소년극장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보다 경제적 수준이 높거나 비슷하거나 아니거나, 많은 나라에 국립극장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국립아동청소년공연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공청회

발제

---

아동청소년 공연예술 활성화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김종선 이사  
(경기문화재단)

## 아동청소년 공연예술 활성화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김 종 선 (경기문화재단 이사)

### 1. 아동청소년 공연예술 활성화의 법적 근거 마련

#### 1) 문화예술진흥법의 아동청소년 예술 활성화 근거 마련

아동청소년의 예술 활동과 체험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국민의 기본권인 문화권과, 삶다운 삶, 나아가 한류의 기반을 닦는 차원에서도 당연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잘못된 구조를 지속해 왔습니다. 문화예술의 공공성, 특히 예술의 공공재로서 성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니다. 국가가 예술가를 위해 지원을 한다는 구조로 예술정책은 왜곡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블랙리스트와 같은 국가 중심 예술 지원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예술 활성화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연한 국가의 의무가 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의 개정을 통하여 국가가 아동청소년 예술, 특히 공연예술의 활성화 의무를 규정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조항에 ‘아동청소년 예술’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예술은 아동청소년이 참여하거나, 교육하거나,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라는 항목의 개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예술을 특화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 지원의 차별성, 집중을 이루어내기 위한 법률적 전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3항의 문화시설의 정의에 ‘아동청소년 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항목을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예술 시설의 국가 지원의 구조화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는 예술가를 공공재로서 육성하고 국가 예술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 선택입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이하 생략)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조항에 항을 추가하여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흥시책은 아동청소년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적시하여 아동청소년 예술 진흥의 시책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조항에 항을 추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문화시설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충분히 아동 청소년 문화시설의 근거를 삼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문화시설 운영 상황은 아동 청소년 예술 활성화를 특화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별도의 문화시설 특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 청소년 예술 활성화는 성장의 과정만이 아니라 특별하게 관리되고 별도의 진흥정책이 필요합니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 아동청소년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의 방향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 필요성과 함께 공연법의 개정도 뒤따라야 합니다. 공연법 제2조(정의) 조항에 항목을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이란 아동청소년이 참가하거나 대상으로 하는 공연예술을 말한다.’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공연과 달리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은 별도의 진흥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공연제작과 실연의 활동은 성인 중심으로 이뤄지며, 현재 국가의 역할은 제작지원 중심으로 진흥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은 교육과 아동청소년 정책과 복합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공연예술 진흥 역시 이러한 복합적인 구조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공동협약을 맺어 ‘아동청소년 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부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1.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대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2. “선전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공연법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의 2항에 목을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공연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앞서 공연법의 정의 조항 개정과 함께 아동 청소년 공연예술 진흥을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의 특화된 중요한 사항으로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공연예술 진흥의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예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연기획·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미술·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 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교육시설 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

## 2. 아동청소년공연예술센터의 건립과 운영

### 1) 아동청소년공연예술센터의 건립 필요성

국립아동청소년공연예술센터는 아동청소년 공연예술 진흥의 본부 역할을 합니다. 이미 한국보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나라도 보유, 운영하고 있는 아동청소년공연예술센터는 국가의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의 지원 형태를 연구하고, 정책화하고, 실현하는 기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은 공연예술 중에서 별도의 진흥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공연을 기존의 공연예술 진흥정책안에서 동일하게 풀어낼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이 공연사업이나 활동의 주체로서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 반드시 전문 공연예술가와의 결합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기초와 중등 교육 과정중인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는, 미래의 예술 인재를 육성하는 과정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립아동청소년공연예술센터는 공연장과 다양한 문화시설의 복합형으로 '아동청소년 예술의 전당' 역할을 합니다. 아동청소년 예술 정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소의 역할도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부모의 아동청소년 예술 활동 참여와 지원을 위한 역할도 수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향후 아동청소년 예술 진흥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아동청소년공연예술센터의 건립으로 확장하고 독립적이지 상호 협력하는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 2)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센터 건립의 추진방향

오늘 공청회를 거쳐 아동청소년 예술 진흥을 위한 법안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오늘 공청회 개최를 주최한 오신환 의원실과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이하 아시테지) 한국본부가 협력하여 법률 개정안을 만들고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충분히 법 개정이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추진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국립아동청소년공연예술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는 차기년도 예산 편성의 반영을 의미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 작성 시 '국립아동청소년공연예술센터 건립 설계 예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산의 규모는 충분히 논의를 통하여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계 예산의 2020년도 반영과 국제 공모를 통한 설계안의 확정, 건립 지역의 확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후 연속 사업으로 건립비를 국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2022년에는 국립 '한국 아동청소년공연예술센터'를 출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별도의 추진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아시테지를 중심으로 순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3) 국립아동청소년공연예술센터의 운영

국립아동청소년공연예술센터의 운영은 기존 문화예술기관의 운영과 달리 자율과 참여 속에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기존의 공공 문화예술 기관의 운영은 공무원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 기관의 운영은 국가 중심이 아니라, 예술기획자와 정책 전문가를 포함하는 예술가와 예술 향유권을 지닌 시민의 참여로 이뤄지는 것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한국의 문화예술 기관은 예술을 위한 기관의 역할보다는 기관 자체를 위한 기관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진흥은 예술가의 일자리와도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가가 예술기관의 직원이 되는 것은 정규직이 아니라 순환하는 직제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센터는 일반 관리직을 제외하고 예술가가 행정과 운영에 참여하는 열린 구조를 가지길 희망합니다. 정책, 기획, 운영의 직원은 예술가와 예술단체, 예술정책 전문가 등이 임기를 가지고 참여 운영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일종의 '예술 프리랜서의 운영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테지 역시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센터의 중요한 운영진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적 일자리로서 예술가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예술가의 일자리는 예술행정의 참여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예술활동과 역할 반영을 위하여 임기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센터는 당연히 아동청소년과 시민들 역시 참여하여 아동청소년 진흥 정책 수립, 시행과 기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이후 공공문화예술 기관의 운영 구조를 변화시키는 본보기로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공연예술센터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운영 구조도 가져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단체의 위상을 지니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연관부처의 예산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복 예산의 낭비를 막고, 전문 정책기관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구조입니다.

모쪼록 오늘의 공청회가 '국립아동청소년공연예술센터'의 건립의 결과를 낳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립아동청소년공연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공청회

토론

---

이선영 과장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